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9 호

「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6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개정 및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적용하고,
- 나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정활동비 인상분 반영(안 제2조)
 -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: 900,000원 → 1,200,000원
 - 보조활동비: 200,000원 → 300,000원
- 나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(안 제5조)
 - 의정활동비 및 여비 →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, 여비
 -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 미지급 방안 마련
 - 경고 또는 사과 징계에 따른 의정비 감액 방안 마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1일(수)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양식: 붙임 참조

나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bs0831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640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)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